
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 제36조의12 제1항제5호가 토지보상법 제4조제7호에 해당되는지 여부

1 질의

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12 제1항제5호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7호에 해당되는지 여부

2 회신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 할 수 있는 사업은 “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(제7호) ” 이라 규정하고 있고, 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 제36조의 1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화사업자는 “그 밖에 지역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선정한 사업 (제5호) ” 에 해당하는 특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때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」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• 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지역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선정한 사업의 경우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 된다고 봅니다.

[2008.01.05. 토지정책팀-54]